|  |  |  |
| --- | --- | --- |
|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관리방법**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68호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을 규율하고 에너지절감·저탄소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관리방법>을 제정 및 공표하며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장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2015년 9월 17일**제1장 총칙****제1조** 에너지 사용 제품 및 기타 제품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재료 활용을 개선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을 규율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감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이 방법에서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이라 함은 에너지절감제품 인증과 저탄소제품 인증을 포함한다. 에너지절감제품 인증이라 함은 인증기구가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해당 국가표준, 업계표준 또는 인증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합격 평정 활동을 지칭한다. 저탄소제품 인증이라 함은 인증기구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저탄소제품 평가표준 또는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함됨을 증명하는 합격 평정 활동을 지칭한다.**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국(이하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업무를 주관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전개혁위'로 약칭)는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업무에 대한 지도를 책임진다.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로 약칭)는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의 실시, 감독관리와 종합조율 업무를 책임진다.지방 각 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각 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 질검양국'으로 약칭)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내의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제5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 및 국가인감위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부서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업무 조율 조직을 구축하여 제품 인증목록, 인증근거, 인증결과의 채납 등 관련 사항을 공동 확정한다.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목록은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 및 국가인감위가 연합발표한다.**제6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및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감법> 및 국가의 관련 산업정책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업, 건축, 교통운수, 공공기구 등 분야에서 관련기구의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등 서비스 활동을 촉진시키고 인증결과를 채납한다.국가발전개혁위,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및 지방정부 산하의 주관부서는 관련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을 촉진시키고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통과 제품의 사용을 격려한다.**제7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와 그 인력은 종업활동 중에 알게된 상업비밀과 기술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제2장 인증의 실시****제8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규칙은 국가인감위가 국가발전개혁위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의 직책과 연관된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규칙은 국가인감위가 공표한다.**제9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업무를 취급하는 인증기구는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인증기구 관리방법>에 규정한 기본조건과 제품인증기구 통용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필요한 관련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제10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관련 검사·검측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는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검사·검측기구 능력 통용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검사·검측 업무에 필요한 관련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제11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구는 국가인감위가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다.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기구 명록과 관련 정보는 부서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업무 조율 조직의 연구를 거친 후 국가인감위가 공표한다.**제12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검사 또는 확인조사에 종사하는 인력은 검사 또는 확인조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었고 국가인증인력등록기구의 등록을 거친 자이어야 한다.**제13조** 제품 생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 의뢰인'으로 약칭)는 인증기구에 의뢰하여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인증기구는 심사를 거쳐 인증조건에 부합됨을 확인한 경우 의뢰사항을 접수해야 한다.**제14조** 인증기구는 인증 의뢰사항을 접수한 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품 검사·검측, 공장검사 또는 현장확인조사를 배정해야 한다.**제15조** 인증기구는 인증 의뢰인이 제공한 견본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과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인증 의뢰인이 견본 제출, 현장에서 견본을 채취하거나 현장에서 견본을 봉인한 후 의뢰인이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검사·검측기구에 의뢰하여 견본에 대한 제품 형식시험을 실시한다.**제16조** 검사·검측기구는 검사·검측을 실시함에 있어 검사·검측 결과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고 검사·검측 전체 과정을 온전하게 기록 및 보관함으로써 검사·검측 과정과 결과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인증통과 제품에 대한 인증기구의 추적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검사·검측기구와 그 관련 인력은 그가 발행한 검사·검측보고서의 내용과 검사·검측 결론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견본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인증기구에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제17조** 인증규칙에 근거하여 공장검사 또는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증기구는 국가인증인력등록기구에 등록된 인증검사원 또는 인증확인조사원을 파견하여 검사 또는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에너지절감제품 검사는 제품 생산기업의 품질보장능력, 생산제품과 형식시험제품의 일치성 등 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저탄소제품 검사는 제품 생산공예절차 및 관련 제출서류의 일치성, 생산 관련 과정의 에너지·재료 평형성, 증거의 신뢰성, 생산제품과 검측견본의 일치성, 생산 관련 에너지 소모량 모니터링 설비의 상태, 탄소 배출량 계산의 온전성 및 제품 생산기업의 품질보장 수준과 능력 등 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제18조** 인증기구는 제품 검사·검측과 공장검사 또는 확인조사를 마친 후 인증 요구를 만족시키는 경우 인증 의뢰인에게 인증증서를 발행하고 인증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 의뢰인에게 서면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인증기구 및 그 관련 인력은 그가 내린 인증결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제19조**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과 빈도로 인증통과 제품과 그 생산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증통과 제품이 인증요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통제 및 검증해야 한다.인증요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인증기구는 해당 상황별로 인증증서 일시 중단 또는 취소의 처리결정을 내리고 공표해야 한다.**제20조** 인증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수수료 기준, 제품의 인증통과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결과 채납 관련 데이터와 업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가인감위에 보고해야 한다.**제21조** 국가인감위와 국가발전개혁위는 에너지절감·저탄소인증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술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심의한다.인증기술위원회는 비(非)상설기구 형태로 운영되며 국무원 관련부서, 업계협회, 인증기구, 기업대표 및 관련 전문가가 위원직을 맡는다.**제22조** 인증기구는 리스크 예방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리스크 펀드 또는 보험 가입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이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와 책임을 예방해야 한다.**제3장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제23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증서의 양식, 내용은 국가인감위가 통일적으로 제정 및 공표한다.**제24조** 인증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 의뢰인의 명칭, 주소;(2) 제품 생산자(제조업체)의 명칭, 주소;(3) 피의뢰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필요한 경우);(4) 제품명칭과 제품 시리즈, 규격/모델;(5) 인증 근거;(6) 인증 모드;(7) 증서 발급일자와 유효기한;(8) 증서 발급기구;(9) 증서 고유번호;(10) 제품의 탄소 배출 리스트 및 그 첨부서류;(11) 표시가 필요한 기타 내용.**제25조**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인증기구는 인증통과 제품 및 그 생산기업에 대한 추적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연도검사 효력 상태 조회 사이트와 전화를 인증증서에 표시해야 한다.**제26조**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황별로 적시에 인증증서의 변경, 갱신, 말소, 일시 중단 또는 취소의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제27조** 에너지절감제품 인증마크의 양식은 기본도안, 인증기구 식별정보로 구성되며 기본도안은 다음 도안과 같고 그 중 ABCDE는 인증기구의 약칭을 대표한다.节能ABCDE저탄소제품 인증마크의 양식은 기본도안, 인증기구 식별정보로 구성되며 기본도안은 다음 도안과 같고 그 중 ABCDE는 인증기구의 약칭을 대표한다.MMS_20140528_041243_2**제28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한 인증 의뢰인은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인증마크 사용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제품 또는 그 포장물, 광고, 제품소개 등 홍보자료에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용해야 한다.인증기구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증통과 제품의 인증 의뢰인이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제29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위조, 변조, 도용, 불법 매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제4장 감독관리****제30조**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기구와 검사·검측기구에 대해 정기적 또 비정기적인 특별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불법·범칙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한다.**제31조** 지방 질검양국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의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제30조** 인증 의뢰인은 인증기구의 인증 활동과 인증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증기구의 처리결과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감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33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 중에 발생한 불법·범칙행위를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질검양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질검양국은 지체없이 조사·처리해야 하고 신고인 신상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제34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증서를 위조, 변조, 도용, 불법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지방 질검양국에서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5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마크를 위조, 변조, 도용, 불법 매매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마크를 양도하는 경우 지방 질검양국에서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6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 중에 기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 및 부문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37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관련 주체의 불법·범칙행위에 대한 신용기록을 수립하여 전국 통합 신용정보공유·교환플랫폼에 등록한다.**제5장 부칙****제38조** 인증기구는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해 인증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한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의 새로운 분야에서 관련 제품의 인증 업무를 자주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스스로 제정한 인증규칙은 국가인감위에 비안(備案)해야 한다.**제39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해야 한다.**제40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 국가발전개혁위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해석을 책임진다.**제41조** 이 방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인감위가 2013년 2월 18일에 공표한 <저탄소제품 인증 관리 잠정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节能低碳产品认证管理办法**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68号为了规范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促进节能低碳产业发展，特制定《节能低碳产品认证管理办法》，现予公布，自2015年11月1日起施行。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局长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主任2015年9月17日**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了提高用能产品以及其它产品的能源利用效率，改进材料利用，控制温室气体排放，应对气候变化，规范和管理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根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第二条** 本办法所称节能低碳产品认证，包括节能产品认证和低碳产品认证。节能产品认证是指由认证机构证明用能产品在能源利用效率方面符合相应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认证技术规范要求的合格评定活动；低碳产品认证是指由认证机构证明产品温室气体排放量符合相应低碳产品评价标准或者技术规范要求的合格评定活动。**第三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应当遵守本办法。**第四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节能低碳产品认证工作；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以下简称国家发展改革委）负责指导开展节能低碳产品认证工作。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国家认监委）负责节能低碳产品认证的组织实施、监督管理和综合协调工作。地方各级质量技术监督部门和各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统称地方质检两局）按照各自职责，负责所辖区域内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的监督管理工作。**第五条** 国家发展改革委、国家质检总局和国家认监委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节能低碳产品认证部际协调工作机制，共同确定产品认证目录、认证依据、认证结果采信等有关事项。节能、低碳产品认证目录由国家发展改革委、国家质检总局和国家认监委联合发布。**第六条** 国家发展改革委、国家质检总局、国家认监委以及国务院有关部门，依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以及国家相关产业政策规定，在工业、建筑、交通运输、公共机构等领域，推动相关机构开展节能低碳产品认证等服务活动，并采信认证结果。国家发展改革委、国务院其他有关部门以及地方政府主管部门依据相关产业政策，推动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鼓励使用获得节能低碳认证的产品。**第七条** 从事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的机构及其人员，对其从业活动中所知悉的商业秘密和技术秘密负有保密义务。**第二章 认证实施****第八条** 节能、低碳产品认证规则由国家认监委会同国家发展改革委制定。涉及国务院有关部门职责的，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意见。节能、低碳产品认证规则由国家认监委发布。**第九条** 从事节能低碳产品认证的认证机构应当依法设立，符合《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认证机构管理办法》规定的基本条件和产品认证机构通用要求，并具备从事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相关技术能力。**第十条** 从事节能低碳产品认证相关检验检测活动的机构应当依法经过资质认定，符合检验检测机构能力的通用要求，并具备从事节能低碳产品认证检验检测工作相关技术能力。**第十一条** 国家认监委对从事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的认证机构，依法予以批准。节能低碳产品认证机构名录及相关信息经节能低碳产品认证部际协调工作机制研究后，由国家认监委公布。**第十二条** 从事节能低碳产品认证检查或者核查的人员，应当具备检查或者核查的技术能力，并经国家认证人员注册机构注册。**第十三条** 产品的生产者或者销售者（以下简称认证委托人）可以委托认证机构进行节能、低碳产品认证，并按照认证规则的规定提交相关资料。认证机构经审查符合认证条件的，应当予以受理。**第十四条** 认证机构受理认证委托后，应当按照节能、低碳产品认证规则的规定，安排产品检验检测、工厂检查或者现场核查。**第十五条** 认证机构应当对认证委托人提供样品的真实性进行审查，并根据产品特点和实际情况，采取认证委托人送样、现场抽样或者现场封样后由委托人送样等方式，委托符合本办法规定的检验检测机构对样品进行产品型式试验。**第十六条** 检验检测机构对样品进行检验检测，应当确保检验检测结果的真实、准确，并对检验检测全过程做出完整记录，归档留存，保证检验检测过程和结果具有可追溯性，配合认证机构对获证产品进行有效的跟踪检查。检验检测机构及其有关人员应当对其作出的检验检测报告内容以及检验检测结论负责，对样品真实性有疑义的，应当向认证机构说明情况，并作出相应处理。**第十七条** 根据认证规则需要进行工厂检查或者核查的，认证机构应当委派经国家认证人员注册机构注册的认证检查员或者认证核查员，进行检查或者核查。节能产品认证的检查，需要对产品生产企业的质量保证能力、生产产品与型式试验样品的一致性等情况进行检查。低碳产品认证的核查，需要对产品生产工艺流程与相关提交文件的一致性、生产相关过程的能量和物料平衡、证据的可靠性、生产产品与检测样品的一致性、生产相关能耗监测设备的状态、碳排放计算的完整性以及产品生产企业的质量保证水平和能力等情况进行核查。**第十八条** 认证机构完成产品检验检测和工厂检查或者核查后，对符合认证要求的，向认证委托人出具认证证书；对不符合认证要求的，应当书面通知认证委托人，并说明理由。认证机构及其有关人员应当对其作出的认证结论负责。**第十九条** 认证机构应当按照认证规则的规定，采取适当合理的方式和频次，对取得认证的产品及其生产企业实施有效的跟踪检查，控制并验证取得认证的产品持续符合认证要求。对于不能持续符合认证要求的，认证机构应当根据相应情形作出暂停或者撤销认证证书的处理，并予公布。**第二十条** 认证机构应当依法公开节能低碳产品认证收费标准、产品获证情况等相关信息，并定期将节能低碳产品认证结果采信等有关数据和工作情况，报告国家认监委。**第二十一条** 国家认监委和国家发展改革委组建节能低碳认证技术委员会，对涉及认证技术的重大问题进行研究和审议。认证技术委员会为非常设机构，由国务院相关部门、行业协会、认证机构、企业代表以及相关专家担任委员。**第二十二条** 认证机构应当建立风险防范机制，采取设立风险基金或者投保等合理、有效的防范措施，防范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可能引发的风险和责任。**第三章 认证证书和认证标志****第二十三条** 节能、低碳产品认证证书的格式、内容由国家认监委统一制定发布。**第二十四条** 认证证书应当包括以下基本内容：（一）认证委托人名称、地址；（二）产品生产者(制造商)名称、地址；（三）被委托生产企业名称、地址（需要时）；（四）产品名称和产品系列、规格/型号；（五）认证依据；（六）认证模式；（七）发证日期和有效期限；（八）发证机构；（九）证书编号；（十）产品碳排放清单及其附件；（十一）其他需要标注的内容。**第二十五条** 认证证书有效期为3年。认证机构应当根据其对取得认证的产品及其生产企业的跟踪检查情况，在认证证书上注明年度检查有效状态的查询网址和电话。**第二十六条** 认证机构应当按照认证规则的规定，针对不同情形，及时作出认证证书的变更、扩展、注销、暂停或者撤销的处理决定。**第二十七条** 节能产品认证标志的式样由基本图案、认证机构识别信息组成，基本图案如下图所示，其中ABCDE代表认证机构简称：节能ABCDE低碳产品认证标志的式样由基本图案、认证机构识别信息组成，基本图案如下图所示，其中ABCDE代表认证机构简称： MMS_20140528_041243_2**第二十八条** 取得节能低碳产品认证的认证委托人，应当建立认证证书和认证标志使用管理制度，对认证标志的使用情况如实记录和存档，并在产品或者其包装物、广告、产品介绍等宣传材料中正确标注和使用认证标志。认证机构应当采取有效措施，监督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正确使用认证证书和认证标志。**第二十九条** 任何组织和个人不得伪造、变造、冒用、非法买卖和转让节能、低碳产品认证证书和认证标志。**第四章 监督管理****第三十条** 国家质检总局、国家认监委对节能低碳产品认证机构和检验检测机构开展定期或者不定期的专项监督检查，发现违法违规行为的，依法进行查处。**第三十一条** 地方质检两局按照各自职责，依法对所辖区域内的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实施监督检查，对违法行为进行查处。**第三十二条** 认证委托人对认证机构的认证活动以及认证结论有异议的，可以向认证机构提出申诉，对认证机构处理结果仍有异议的，可以向国家认监委申诉。**第三十三条** 任何组织和个人对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中的违法违规行为，有权向国家认监委或者地方质检两局举报，国家认监委或者地方质检两局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第三十四条** 伪造、变造、冒用、非法买卖或者转让节能、低碳产品认证证书的，由地方质检两局责令改正，并处3万元罚款。**第三十五条** 伪造、变造、冒用、非法买卖节能、低碳产品认证标志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的规定处罚。转让节能、低碳产品认证标志的，由地方质检两局责令改正，并处3万元以下的罚款。**第三十六条** 对于节能低碳产品认证活动中的其他违法行为，依照相关法律、行政法规和部门规章的规定予以处罚。**第三十七条** 国家发展改革委、国家质检总局、国家认监委对节能低碳产品认证相关主体的违法违规行为建立信用记录，并纳入全国统一的信用信息共享交换平台。**第五章 附 则****第三十八条** 认证机构可以根据市场需求，在国家尚未制定认证规则的节能低碳产品认证新领域，自行开展相关产品认证业务，自行制定的认证规则应当向国家认监委备案。**第三十九条** 节能低碳产品认证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第四十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国家发展改革委在各自职权范围内负责解释。**第四十一条** 本办法自2015年11月1日起施行。国家发展改革委、国家认监委于2013年2月18日制定发布的《低碳产品认证管理暂行办法》同时废止。 |